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 : 2005. 8. 30

제안자 : 박지위 위원외 1인

1. 제안이유

○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을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토지분 재산세 과표 경감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함.

2. 주요개정골자

○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 (안 제24조의2)

3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개정근거 :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및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경감 관련
구세감면조례표준안 이첩시달 (2005.8.19 서울특별시장)

다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라. 신·구 조문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강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강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의 2(재산세 과표경감)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<p>제24의 2(재산세 과표경감)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.</p>